

의안 번호	586
----------	-----

-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2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2026.04.21.

전문위원 송 세 창

1. 제안이유

- 본 안건은 서울시 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겨울철 제설 민간 용역비를 확보하고, 노후 장비를 적기에 교체·확충하기 위한 것임. 아울러, 제설 취약 구간의 도로 열선 설치에 앞서 노후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된 것임.
- 이에 2026년 4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립전 예산 편성 : 1건 (180,000천원)

- 도로과 : 제설대책 추진(시비 180,000천원)

※ 서울시 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반영.

나. 주요 사업 증액 편성 : 1건 (431,520천원)

- 도로과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화랑로13가길(제1월곡잔디구장 주변) 등 4개소 도로 열선 설치 예정지
노후 도로포장 및 시설물 사전 정비 예산 반영(전액 구비)

3.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세 입	13,410,923	13,230,923	180,000	1.36
세 출	42,378,701	41,767,181	611,520	1.46

4. 세입 현황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	비율(%)
계	13,410,923	13,230,923	180,000	1.36
일반회계	6,016,587	5,836,587	180,000	3.08
특별회계	7,394,336	7,394,336	0	0

□ 부서별 현황 (일반 · 특별회계 전체)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	비율(%)
계		13,410,923	13,230,923	180,000	1.36
일반회계	소계	6,016,587	5,836,587	180,000	3.08
	교통행정과	1,293,898	1,293,898	0	0
	교통지도과	123,754	123,754	0	0
	건설관리과	3,606,082	3,606,082	0	0
	도로과	988,358	808,358	180,000	22.27
	치수과	4,495	4,495	0	0
특별회계	소계	7,394,336	7,394,336	0	0
	교통행정과	270,000	270,000	0	0
	교통지도과	7,124,336	7,124,336	0	0

□ 세입 검토의견

※ 천원 단위 미만 반올림 처리

-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2억3,092만원 대비 **1억8,000만원 (1.36%) 증액**된 134억1,09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번 세입 추경안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치수과의 기정 예산 변동 없이 전액 도로과 소관 시비 보조금 증액분만 반영된 것임.
-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가. 도로과 (1억8,000만원)

: 시·도비보조금으로 ‘제설대책 추진’ (성립전) 1억8,000만원(시비 100%)을 세입 반영하였음.

- 사업내용 : 관내 도로 제설작업 용역 및 노후 제설장비 교체
- 추경사유 : 서울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반영

※ 서울시 도로관리과-3300(2026.2.13.)

- 해당 세입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시비 보조금으로서, 성립전 예산의 편성 요건을 적정하게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5. 세출 현황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	비율(%)
계	42,378,701	41,767,181	611,520	1.46
일반회계	34,639,551	34,028,031	611,520	1.80
특별회계	7,739,150	7,739,150	0	0

부서별 현황 (일반 · 특별회계 전체)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	비율(%)	
계	42,378,701	41,767,181	611,520	1.46	
일반회계	소계	34,639,551	34,028,031	611,520	1.80
	교통행정과	2,701,882	2,701,882	0	0
	교통지도과	48,809	48,809	0	0
	건설관리과	1,253,291	1,253,291	0	0
	도로과	19,836,195	19,224,675	611,520	3.18
	치수과	10,799,374	10,799,374	0	0
특별회계	소계	7,739,150	7,739,150	0	0
	교통행정과	2,334,224	2,334,224	0	0
	교통지도과	5,404,926	5,404,926	0	0

□ 도로과 세출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재원	비고
합계	19,836,195	19,224,675	611,520		
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4,213,520	3,782,000	431,520	구비	
② 제설민간용역 등(성립전)	580,000	400,000	180,000	시비	성립전

※ ② 제설대책 추진 사업(제설민간용역 등)의 기정예산(400,000천원)은 구비로 기편성된 것이며, 금회 추경 증액분 180,000천원은 서울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신규 반영임.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건설관리과 · 치수과는 변동 없음.

□ 사업별 주요내용

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431,520천원 증액 (구비)**

사업목적	관내 노후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를 통한 도로 안전 환경 확보
사업근거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사업기간	2026. 4. ~ 2026. 12.
추경사유	‘화랑로13가길 등 4개소’ 제설 취약구간에 도로열선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 구간 도로포장의 노후화로 인해 열선 설치 이전 도로 사전 정비가 필요하여 증액 편성
산출근거	- 아스팔트 도로정비 24.8a × 14,000천원 = 347,200천원 - 아스팔트 미끄럼포장 2,480㎡ × 34천원 = 84,320천원
사업위치	① 화랑로13가길 (제1월곡잔디구장 주변) : B=7m, L=150m, A=10.5a ② 성북로31길 주변 (다원학교 인근) : B=5m, L=130m, A=6.5a ③ 돌곶이로41가길 (장위기사식당 주변) : B=4m, L=90m, A=3.6a ④ 삼양로9길 (계성고교 주변) : B=7m, L=60m, A=4.2a ※ B = 도로 폭, L = 도로 길이, A = 면적(아르, a)

나. 제설민간용역 등(성립전) : 180,000천원 증액 (시비)

사업목적	동절기 제설 대응을 위한 민간용역 및 제설 관련 부대 경비 확보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취약지점 거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사업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사업내용	- 관내 도로 제설작업 용역 및 노후 제설장비 교체 - 총사업비 : 580,000천원 (시비 180,000 / 구비 400,000)
추진일정	- 2026.5. ~ 10. : 제설대책 대비 장비 점검 - 2026.11. ~ 2027.3. : 2026/2027년 제설대책 시행
성립전 근거	서울시 도로관리과-3300(2026.2.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 알림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따른 성립전 집행 후 금회 추경 반영

세출 검토의견

※ 천원 단위 미만 반올림 처리

○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7억6,718만원 대비 **6억1,152만원 (1.46%)**이 증액된 423억7,87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이번 세출 추경안은 타 부서 변동 없이 도로과 소관 2개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되었으며, 세부 사업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도로과 (**6억1,152만원**)

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4억3,152만원** 증액

: 본 사업은 화랑로13가길 등 4개소의 도로 열선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 노후된 노면 및 시설물을 사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 열선 설치 시 노후 노면을 정비하지 않은 채 시공할 경우, 열선 가동 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도로 파손이 가속화되어 향후 중복 굴착 및 재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됨.

따라서, 열선 시공 전 선제적으로 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다만, 본 사업은 당해 연도 내 집행 완료를 전제로 하는 ‘연간단가’ 계약 방식인 만큼, 추경 편성 이후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방지해야 하며, 철저한 공정 관리로 공사 중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나. 제설대책 추진(성립전) 1억8,000만원 증액

: 본 사업은 서울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서울시 도로관리과-3300, 2026.2.13.)에 따라 제설 민간용역비 확보 및 노후 제설장비 교체를 위해 편성된 성립전 예산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강설 상황 등 기상 이변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사료됨.

6. 검토결과

-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액 도로과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생활 편의와 직결된 도로 인프라 관리로 선제적 재난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음.
- 특히 시비 보조금을 통한 제설 대응력 강화와 구비 투입을 통한 도로 열선 설치 장소 사전 정비는 예산 집행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편성으로 사료됨.

- 이에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제142조¹⁾와 「지방재정법」 제45조²⁾에 근거하여 편성 절차와 요건을 적정하게 준수하였으며, 예산 편성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2)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